

검사 업무 방침 편람 - 서문

발효일:

2018 년 3 월 1 일

목적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기소는 법치주의에 필수적이다. 사법 제도는 잘 개발된 정책 지침으로 보강되며, 이 지침은 검사가 공익을 위하여 어려운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할 때 도움이 된다.

검사 업무 방침 편람에는 검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은 물론 특정 상황 지침도 수록되어 있으며, 혐의 평가, 대안 조치, 합의 논의 등 기본적인 기소 고려 사항에 관한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

이 업무 방침은 공개 문서이다. 이런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목표 달성이 촉진된다. 또한, 소추 업무 수행 방식과 개별 사건에 대한 공익 추구 시 검사의 헌법상 독립성 행사 방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검사 업무 방침 편람에는 법률적 지위가 없다. 이 편람은 *형법(Criminal Code)*이나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또는 기타 적용 법령보다 결코 우선하지 않으며, 일반 대중에게 법률상의 조언을 제공하거나 법적 절차에서 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내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다.

용어의 의미

BC 소추 서비스부(Prosecution Service)는 법무부(Ministry of Attorney General) 소속 형사 사법국(Criminal Justice Branch, “사법국”이라고도 함)이다. 이 용어들은 검사 업무 방침 편람 전체에서 서로 바꾸어 사용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 편람에서 업무 방침이란 달리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한 BC 소추 서비스부 업무 방침을 가리킨다.

검사 업무 방침 편람에서 “해야 한다(should)”와 “반드시 해야 한다(must)”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검사는 ~해야 한다”라는 말은 검사가 사법 정의상 업무 방침의 지침과 상반되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업무 방침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검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검사법(Crown Counsel Act)* 제 4 조 (3)항에 따라 법무 차관보(Assistant Deputy Attorney General, ADAG)의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전, 사명 및 가치관

사법국의 [비전, 사명 및 가치관](#)은 사법국 업무 방침의 형성과 이해에 필수 요소이다. 이는 사법국 전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 수행에 지침이 되는 근거이다.

사법국의 권한

검사법, R.S.B.C., 1996, c.87 에 따라, 사법국은 정부를 대신하여 캐나다 정부의 관할권에 들지 않는 모든 형사 소추와 규제 기소 및 상소를 승인하고 수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사법국은 법무 차관보(ADAG)가 관리하며, 법무 차관보는 *형법*의 목적상 제 3 조 (2)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지명된다. 그러면 ADAG 는 검사, 임시 변호사, 특별 검사 등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여 정부 대신 소추와 상소를 승인하고 수행하게 한다.

*검사법*은 법무부 장관을 통한 사법국과 정부 간 관계에도 적용되며, 사법국의 권한 행사에 상당한 독립성을 부여한다. 사법국 업무 방침이나 특정 소추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BC 주 관보에 게재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검사법*은 그러한 독립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

검사의 소임

법원은 검사를 “사법 대리인”으로 묘사해왔다. 검사의 기능은 “준사법적”이라고 묘사되었다. 검사는 자신의 분별력을 반드시 공정하게, 치우침 없이, 성실하게, 최고 윤리 기준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정치적이고 개인적이며 사사로운 고려가 검사의 업무 추진 방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우리의 사법 제도에서 검사의 소임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검사의 소임은 승패의 개념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의 기능은 공적 의무의 문제로 시민 생활에서 그보다 더 큰 개인적 책임이 부과되는 기능은 있을 수 없다. 사법 절차의 위엄, 중대성,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몸에 배어 있으면 이는 효율적으로 수행된다.

(국가 대 바우처 사건(R v Boucher)(1954), 110 CCC 263(SCC), 270, 랜드(Rand) 판사)

사법 운용 시 정부 법률 대리인의 소임은 각급 법원과 지역 사회에 대단히 중요하다. 검사는 위협과 협박 시도에 직면할 때 반드시 용기 있게 맞서 나가야 한다... 검사는 반드시 공정성의 상징이어야 하며, 타당한 모든 것을 신속히 공개하되 증인의 안녕과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한다. 지역 사회는 검사를 권위의 상징이자 형사 문제에서 지역 사회의 대변자로 바라본다... 법원과 대중은 검사를 크게 신뢰한다.

(국가 대 로지아코 사건(R. v. Logiacco)(1984), 11 CCC(3d) 374(Ont CA), 코리(Cory) 판사)

법의 지배

사법국은 소추 업무 수행 시 법의 지배를 받으며 법의 지배를 고수한다. 법의 지배가 상징하고 실제로 헌법상 요구하는 바는 형사 문제를 다루는 판사와 배심원단이 법을 적용할 때 증인이 제공하는 증언을 비롯하여 그들 앞에 제시되는 증거를 *치우침 없이*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과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다. 준수법적 사법 대리인으로서 소임을 수행하는 검사는 이 두 원칙을 계속 의식하고 존중하며, 이 두 원칙을 편견 없이 공정하게 힘써 적용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검사는 판사가 또는 판사와 배심원단도 역시 이런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각 사건의 실상을 평가하여야 한다.

업무 방침과 기소 재량권 간 균형

업무 방침의 주된 목적은 검사가 기본적인 문제에 관하여 결정하는 일을 돕는 것이다. 특정 업무 방침은 공익상의 적절한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재량권 행사의 기틀을 제공한다. 검사는 적절한 경우 추가 조언을 구하고 승인을 받는다. 업무 방침은 기소 재량권의 범위와 적정 행사에 적용되는 법체계도 반영한다.

고위 검사라도 동료의 조언을 구하고 업무 방침에 따라 필요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입법과 법체계, 기술, 법원 규칙, 절차가 변하고 있다. 업무 방침을 참조하면 익숙하지 않은 실무나 절차 영역에서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소 재량권에는 헌법적인 맥락과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법률 전통과 법체계의 틀 안에서만 행사된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대리인으로서 그보다 더 큰 사법 제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법체계에 의하여 수세기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판례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적용한다.

BC 주 내 모든 소추에 대한 책임은 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헌법상의 소임을 독립적으로 또한 사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게 이 기능을 위임하고, 검사는 이 소추 기능을 법무부 장관 대신 행사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 기능을 감독하고 그에 따라 모든 기소 권한 행사에 대하여 입법부에 석명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에 내재된 독립 재량권과 똑같은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독립적이다. 그러나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업무 방침에 따라 책임이 부여되고 기소 재량권을 일관되고 원칙 있게 적용한다. 업무 방침의 궁극적 목표는 사법 제도에 대한 대중의 확신을 고취하는 것이다.

한편, 모든 결정에 업무 방침을 요구하거나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기소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 방침은 지침을 제공하지만, 모든 경우에 결과를 답습할 수도 없고 답습해서도 안 된다. 검사는 각 경우의 고유한 상황에 맞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업무 방침에 따라 특정 공익 요인을 고려해야 하거나 사법국의 특정 선임자들에게 자문하거나 적절한 상황에서는 그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업무 방침이 검사의 기소 재량권 행사를 전적으로 속박해서는 안 된다. 사법 대리인의 독립적인 소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의무적인 지시가 담긴 업무 방침은 극히 적다. 있다 해도 대개 예외적인 요인을 고려할 여지를 남겨 특정 경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적절히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업무 방침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는 기소 재량권 행사에 있어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 언제든지 업무 방침 이외에 ADAG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